

- 국토이용 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
- 자연형태양열 이용시설 및 시공기준
- 오수정화시설 설치기준 개정고시
- 건축물의 가사용승인처리지침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84. 5. 14)

대통령령제11,424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토지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을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규제구역의 지정당시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규제구역의 지정 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21조의 4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득·관리에 소요된 비용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등록세·취득세 및 방위세와 등기에 소요되는 사법서사의 보수 및 중개인의 중개수수료
 2.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

제28조의 제목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신고)”를 “(신고 구역안에서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의 면적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21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신고 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생산농지지역 및 자연농지 지역에서는 660제곱미터 이상
 2. 도시계획구역안의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상
 3.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330제곱미터 이상
 4. 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 임야 및 초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법 제2조의”를 각각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의”로 하고, 동조 제4항제2호중 “은행법 제27조제2호 단서의”를 “은행법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의”로 한다.

제30조제4호중 “체비지를”을 “체비지 등을”로 한다.

제30조제7호 내지 제10호를 제8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어촌근대화촉진법 또는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지개발사업 또는 농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유휴지)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의 10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의 토지가 동조 동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휴지의 결정은 통지후 2월 이내에는 할 수 없다.

1. 토지의 소유자(당해 토지에 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를 포함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
 3. 토지상에 존재하는 권리의 종류 및 그 취득연월일
 4. 통지의 사유
- ②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의견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1조의10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법 제21조의10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가 유휴지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1조의10 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2.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660제곱미터
3. 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1천500제곱미터.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임야 및 초지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1조의10 제 1 항제 4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공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용·사업시설용 기타 이에 준하는 용도에 제공하기에 적합한 토지로서 그러한 용도에 제공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토지 또는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상황등으로 보아 토지이용의 정도가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동일용도 또는 그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이용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면적(건폐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에 한한다)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의 7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⑥ 법 제21조의10 제 5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공인된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액의 산술평균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인된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재평가한 액과 당초의 평가액과의 산술평균액으로 한다.

제32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 2 (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1조의12 제4항에서 “공원·도로·광장·학교 등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45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 2 (지가동향조사등) ① 건설부장관은 연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율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사장에게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 제21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구역 또는 법 제21조의 7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제 1 항 본문중 “법 제29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의 4 제 1 항제 1 호 및 법 제29조제 5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법 제21조의 2 의 규정등의 시행시기에 관한 규정) 법률 제3,139호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 1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21조의 2 내지 제21조의 6 및 제 21조의15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 国土利用管理法施行令 改正理由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1983. 12. 31 법률 제3,707호)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허가 또는 신고의 免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제구역 또는 신고구역 지정 후 분할 함으로써 당해 토지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하도록 함(습 제25조 제 4 항).

나.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계약에 정금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토지의 취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등록세 등으로 함(영 제26조제 2 항).

다.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면적은 다음의 면적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신고구역을 지정 할 당시의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기준면적의 3 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28조제 1 항).

- (1)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서는 660제곱미터
- (2)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업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 (3)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330제곱미터
- (4) 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1천제곱미터.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임야 및 초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라. 유흥지로 결정할 수 있는 면적을 다음의 면적 이상으로 조정함(영 제31조제 4 항).

- (1)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 (2)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지역의 지장이 없는 구역에서는 660제곱미터
- (3) 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1천500제곱미터.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임야 및 초지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마.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이 영 시행일로 함(영 부칙제 2 항).

(법제처 제공)

자연형 태양열 이용촉진

1. 에너지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실정하에서 지속적인 국가 경제 발전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하여는 에너지절

약을 생활화 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이용하는데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되며, 특히 정부에서는

현재와 같이 에너지 사정이 수급과 가격면에서 안정이 되어 있을 때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이용 보급을 심화·확대시켜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국제 에너지 정세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야겠습니다.

2. 태양에너지 이용은 천혜의 자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저온 공정 산업 등 부분에서 효과적인 에너지절약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그 이용 가능량이 무한하고 공해가 전혀 없으며 현재에도 용도와 방법에 따라서는 경제적,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용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체에너지입니다. 당부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주택 및 건물에 대하여는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용화 할 수 있는 이용 방법인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학교교실, 공공관사등에 2년에 걸친 시범건설과 성능평가를 거쳐, 일반 건축물의 난방용으로 중점적인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이란 종래의 설비형시스템(집열기 이용)과는 달리 별도의 특별한 설비가 필요 없이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간단한 태양열 이용 개념을 도입하여, 태양열을 최대한 흡수, 이용토록 함으로써 주택 단열효과와 합하여 난방 에너지의 70% 이상까지도 절약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 바, 별첨과 같이 자연형 태양열 이용 시설 설치 및 시공 기준을 귀부(청, 시도등)에 송부하오니 정부 공공건물이 일반 국민주택에 앞서 에너지절약에 솔선 수범하여야 된다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도입가능한 모든 건축물에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을 적용하여 주실것을 요청 하오며, 또한 관련 투자·출연기관 및 산하단체에도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토록 협조·조치 바랍니다. 아울러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당부에서 매월 개최하는 “에너지소비절약 대책회의”의 결과보고에 포함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 장관

수신처 : 각급행정기관의 장

자연형 태양열이용시설설치 및 시공기준

1. 총 칙

1-1 목 적

이 기준은 자연형 태양열 이용시설 설치 및 시공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을 공공건물 건축설계에 적극 도입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은 건물단열의 개선된 에너지절약기법으로 난방에너지의 30~70% 절약 효과 기대

1-2 용어의 정의

(1)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

건축물에 집열창 및 축열체, 온실등을 설치하여 많은 양의 태양열이 실내에 유입되도록 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집열, 저장하여 자연순환방식(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 태양열로 난방의 일부를 충당

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2) 집열창

태양열을 집열하기 위해 건축물 남측면에 설치하는 투명 혹은 반투명의 창으로서 명창과 천장을포함한다.

(3) 축열바닥

직접 획득형에서 집열된 태양을 실내의 바닥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한 형태를 말한다.

(4) 축열벽

집열된 태양열을 저장하기 위해 집열창과 실내 공간 사이에 설치하는 벽으로서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벽돌, 진흙, 벽돌 등의 벽을 말한다.

(5) 통기구

간접 획득형에서 대류에 의한 난방효과를 얻기 위해 축열벽 상·하단부에 설치하는 통풍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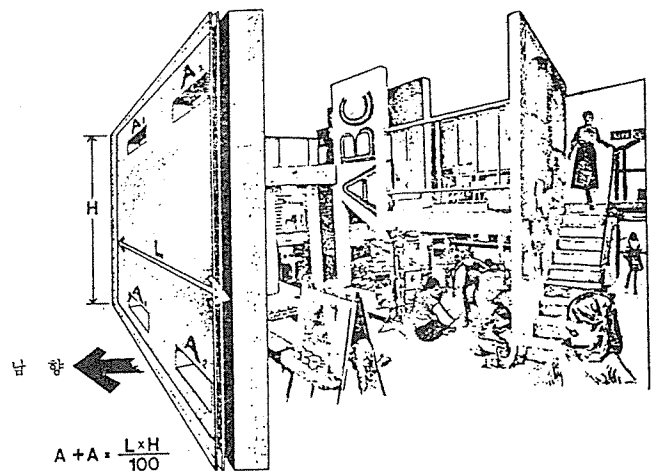


그림 3 통기구의 예

(6) 차 양

여름철 태양 직사광에 의한 실내 과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집열창 상단에 설치하는 고정식이나 가동식의 구조물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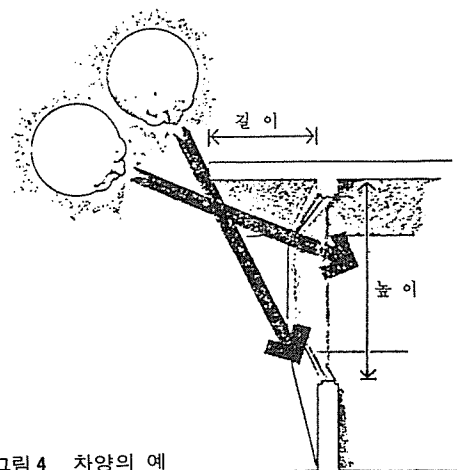


그림 4 차양의 예

(7) 통풍 개폐시설

여름철 실내 통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집열창의 일부를 개폐식으로 한 것을 말한다.

2. 재 료

자연형 태양열 이용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1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표-1) 자연형 태양열 이용시설의 재료

구 성 품	재 료 명	규 격 번 호	비 고
집 열 창	○보통판유리 ○강화판유리 ○복층유리 ○내열성합성수지제	KS L 2001 KS L 2002 KS L 2003 —	유리두께 3mm 이상
집 열 창 틀	○창문의 목재틀재 ○알루미늄 창호 및 창문틀재 ○목재미서기창 및 창틀 ○복층유리 끼우기 단열샷시 ○내후성합성수지제	KS F 3108 KS F 4506 KS F 5601 KS F 6003 —	부식 및 뒤틀림 현상이 없어야 한다.
열 체	○시멘트벽돌 ○콘크리트 ○보통벽돌 ○진흙벽돌	KS F 4004 KS F 4005 KS L 4201 —	
축 열 체 표면	○내열성 무광택 어두운 색(흑색, 암청, 암적, 암갈, 암녹)의 페인트 ○타일(흑색, 암청, 암적, 암갈, 암녹)	— KS L 1001	

3. 설치 및 시공

3-1 입지조건

- (1) 건축물의 입지는 주위 자연물이나 인공물에 의하여 태양광이 차단되지 않아야 한다.
- (2) 건축물의 방향은 정남향을 원칙으로 하되 정남을 기준으로 남동 20도에서 남서 30도의 변위를 가질 수 있다.

3-2 열손실 방지조치

- (1) 외기에 접하는 벽, 바닥, 지붕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한 건축물 열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 이상의 단열 시공을 하여야 한다.
- (2) 외기에 접하는 창호는 단열 공법과 틈새 바람을 줄이는 기밀구조로 하여야 한다.

3-3 집열창

- (1) 집열창은 이중창이나 복층유리(페어글라스)로 시공하여야 한다.
- (2) 집열창과 창틀 사이에는 봉입재를 사용하여 기밀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실내 환기를 위하여 집열창의 일부는 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표-2) 지역별 집열창 설치면적

지역명	위 도	직 접 획 득 형	간 접 획 득 형
춘 천	37.54	난방면적의 24% 이상	난방면적의 62% 이상
서 울	37.34	난방면적의 22% 이상	난방면적의 54% 이상
인 천	37.29	난방면적의 22% 이상	난방면적의 54% 이상
수 원	37.16	난방면적의 23% 이상	난방면적의 57% 이상
청 주	36.38	난방면적의 21% 이상	난방면적의 54% 이상
대 전	36.18	난방면적의 21% 이상	난방면적의 50% 이상
대 구	35.53	난방면적의 19% 이상	난방면적의 43% 이상
전 주	35.49	난방면적의 19% 이상	난방면적의 44% 이상
광 주	35.08	난방면적의 18% 이상	난방면적의 40% 이상
부 산	35.06	난방면적의 16% 이상	난방면적의 34% 이상
계 주	33.31	난방면적의 11% 이상	난방면적의 24% 이상

- (4) 집열창의 향은 건물의 향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5) 집열창의 면적은 가능한 한 표2의 수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집열창 면적계산은 외각 창틀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3-4 축열체

(1) 직접획득형

- 1) 축열체는 직접 획득 공간 부위의 바닥, 벽, 천정에 설치한다.
- 2) 축열체는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럭(내부충진), 적벽돌, 시멘트벽돌, 진흙벽돌등을 사용하되,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경량골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3) 축열체의 두께는 10cm 이상으로 한다.
- 4) 바닥에 축열체를 설치할 경우, 표면중 태양광에 노출되는 부위는 무광택 어두운 색의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단, 벽과 천정은 표면색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 5) 바닥에 축열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표면중 태양광에 노출되는 부위는 입사되는 태양광을 벽이나 천정등의 축열체에 반사시킬 수 있도록 밝은 색의 재질로 마감하는 것이 좋다.

(2) 간접획득형

- 1) 축열체는 남측 집열창과 실내 공간사이의 벽(축열벽)에 설치한다.
- 2) 축열벽의 두께는 사용재료에 따라 아래 수치를 적용한다.

(표-3) 축 열 벽 두께

재 료	두께 (cm)
진 흙 벽 돌	20~30
적 벽 돌	25~35
시 멘 트 벽 돌	30~45
콘 크 리 트	30~45

- 3) 축열벽은 남측 집열창과 면하도록 집열창 면적과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4) 실내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축열벽에 전용 난방면적의 10%정도 크기의 창호를 개폐식으로 된 집열창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창호면적은 축열벽 면적에 포함 산정한다.)
- 5) 태양광에 노출되는 축열벽의 표면은 어두운 색의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3-5 집열창과 축열벽 사이

- (1) 간격은 15cm 정도로 하며 바닥에 개폐장치가 있는 청소용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바닥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경사지게 시공 하여야 한다.
- (3) 하절기 과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단부나 천정에 외기로 통하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단, 환기구에는 동절기에 이를 단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4) 이 부분의 바닥, 간벽, 천정은 건축법시행규칙 제 19조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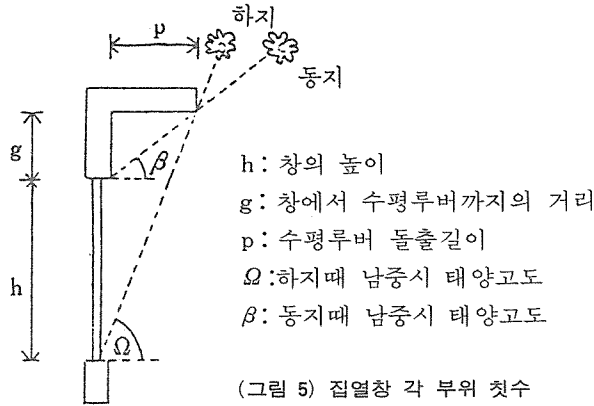
상의 단열시공을 하여야 한다.

3-6 통기구

- (1) 주간에 대류에 의한 난방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축열벽 상·하단부에 통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 (2) 통기구면적은 축열벽 면적의 1~3%로 상·하단부 통기구 사이의 거리를 가능한 한 멀리하여 벽면 전체에 균일하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 (3) 통기구에는 야간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식 바람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7 차 양

- (1) 하절기 태양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집열창 상단부에 차양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차양은 표 4의 수치를 적용한 길이로 한다.



(그림 5) 집열창 각 부위 치수

이때 p와 g를 각각 h와의 비(Rratio)로

표시하면 \bar{p} (돌출비) = $\frac{p}{h}$ 이고, \bar{g} (분리비) = $\frac{g}{h}$ 이다.

(표 4) 차 양 길 이 비

위도	차양돌출길이비 (\bar{p})	창윗틀에서차양까지의 길이비 (\bar{g})
37° 34' (서울)	0.560	0.489
36° 18' (대전)	0.502	0.432
35° 53' (대구)	0.502	0.466
35° 49' (전주)	0.500	0.465
35° 08' (광주)	0.477	0.454
35° 06' (부산)	0.476	0.454
34° 08' (여수)	0.464	0.448
33° 14' (서귀포)	0.415	0.422

차양돌출길이 (P) = $\bar{p} \times$ 창 높이 (h)

창 윗틀에서 차양까지 길이 (g) = $\bar{g} \times$ 창 높이 (h)

(3) 명창의 차양은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천장은 하절기 태양광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연형 태양열 설계기술지원

자연형 태양열 이용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내 “자연형 태양열 설계자문위원회”(대덕연구소, 태양에너지부)의 기술지원 및 자문을 받도록 한다.

오수정화시설 설치기준개정고시(84. 5. 21)

환경청고시제84-8호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83-13호중 오수정화시설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 한다.

오수정화시설 설치기준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회전원판 접촉 방법

구	분	세	부	사	항	비	고
스크린			장기 폭기 방법에 준한다.				계획오수량이 1,000m ³ /일 이
침전분리조			접촉 산하 방법에 준한다.				상인 경우는 침전분리조 대신 표준활성오니 방법의 최초 침전조를 둘 수 있다.
유량조정조			장기 폭기방법에 준한다.				
회전원판접촉조			1. 3실 이상 구분하고 오수가 장시간 회전원판에 접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유효용량은 일평균 1/6에 상당하는 용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회전원판 BOD부하는 15g / m ² / 일 이하가 되게 하여야 한다.				
			4. 회전원판은 그 표면의 약 40%가 오수와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회전원판은 원판 상호간의 간격을 20mm 이상으로 하고 생물막의 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회전원판의 원주속도는 1 분간에 20m 이하로 되게 하여야 한다.				
			7. 조벽 및 저부는 회전원판으로부터 회전원판의 직경의 약 10%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며 오니의 퇴적이 일어나지 않고				

또한 오수가 회전원판에 사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잘 접촉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조에는 덮개를 하고 통기가 잘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최중침전조 장기폭기 방법에 준한다.
다만, 오수의 반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오니농축저류소 장기폭기 방법에 준한다
오니농축조 장기폭기 방법에 준한다.
농축오니저류조 장기폭기 방법에 준한다.

“(주)”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24조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도별 처리대상 인원이 없고, 따라서 분뇨 및 생활하수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의 오수량과 오수농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의 가사용승인처리지침 (84. 5. 22)

건설부훈령제658호

건축물의 가사용승인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 1 조 (목 적) 이 지침은 건축법 제 7 조 제 4 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그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사용건축물의 사용상 안전을 도모하고 가사용승인업무의 적정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법령에 위반한 건축물의 가사용 금지) 대지 및 건축물(미완공된 부분을 포함한다) 이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및 처분이나 조례에 위반하여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을 승인할 수 없다.

제 3 조 (가사용승인기준) 건축물의 가사용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대지의 안전에 관한 사항
 - 가. 붕괴·침하등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 나. 배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다. 옹벽등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 가. 구조내력 및 하중등이 관계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 나. 허용응력도에 미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미완공된 부분의 공사로 인하여 가사용 부분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방화에 관한 사항
 - 가. 가사용부분과 공사중인 부분이 방화벽등으로 차단되어 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 나. 가사용 부분이 내화구조·방화구조 등에 관한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다. 가사용부분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건축설비 및 위생에 관한 사항
 - 가. 가사용부분에 대한 환기설비·난방설비·소화설

비·승강기의 설치 및 위생설비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오수정화시설등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상수도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지하수로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하수구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5. 건축물의 미관 및 조경에 관한 사항

가. 가사용 부분의 구조·색채·형상등이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가사용 부분에 대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

가. 가사용 부분에 상당하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가사용 부분에 상당하는 대피시설등의 지하층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 4 조 (가사용기간) ① 건축물의 가사용 기간은 1 년이 내로 한다. 다만 1 회에 한하여 가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가사용 기간중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때에는 교부된 날로부터 가사용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 5 조 (가사용 기간이 종료된 건축물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는 가사용 기간이 종료된 건축물로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 6 조 (가사용 건축물의 용도제한) 가사용 건축물은 허가 당시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시행당시 가사용 승인을 받아 가사용을 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가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지침 시행당시 가사용승인을 받아 가사용중인 건축물로서 가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1회에 한하여 가사용 기간을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내화물 및 단열재의 형식승인 표시방법고시

동력자원부고시 제84-1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 3항의 규정에 의거 내화물 및 단열재의 형식승인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고시내용: 별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화물 및 단열재의 형식승인 표시방법

1. 내 화 물

구 분	표 시 사 항	표 시 방 법	비 고
전내화벽돌 (모르터제외)	○제조회사명 또는 그 약호 ○SK 번호 또는 종류번호	○매장(개) 마다 표시	전내화벽돌공통적용
보통형벽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 사항 전부	○ 5장류음단위로 표시. 단, 파렛트 포장일 경우에는 포장단위마다 표시	위의공통 적용사항을생략할 수 없음.
이형벽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제 22조의 규정사항 전부	○포장단위마다 표시	
단열벽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 사항 전부	○10장 박스 포장 단위마다 표시	
모르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제 22조의 규정 사항 전부	○최소 포장단위 마다 표시	내화모르터·단열 모르터에 한함

주) 위 표시방법 이외는 매장(개·포) 마다 표시사항 전부 표시

2. 단 열 재

구 분	표 시 사 항	표 시 방 법	비 고
전품목	○형식승인도표 ○제조년월일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 ○종류 또는 밀도 ○치수 또는 등급 ○용도 ○열전도율 ○안전사용온도	○매장(개) 마다 표시. 단, 보존통의 경우 박스 포장시 는 포장단위 마다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 22조의 규정 사항전부표시	○표시사항중범 정해당표시사항만 표시 ○제품에직접인 쇠식으로 표시할 때에는 형식승인 도 표의 색은 제한없음 ○밀도, 치수, 열전도율 표시는 그 단위를 생략할 수 있음.
전품목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사항전부	○매포장단위마다 표시	○위항의 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없음.

- 주: 1. 형식승인 기준상의 단위제품마다 별도포장을 할 경우는 (단위 제품마다의 표시는 생략하고) 그 포장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할 수 있음.
2. 요소발포 보온재등의 현장발포(분무) 시공하는 단열재는 표시사항 전부가 적힌 증명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표시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봄.
3. 단위를 생략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함.

밀도	0.041g/cm ³→(0.041×1000=) 41
열전도율	0.055kcal / mh℃.....→ 0.055
치수	길이 1000mm×너비 500mm×두께 50mm.....→ 1000×500×50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중개정령(84.6.9)

문화공보부령제8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1. 국보·보물 및 중요민속 자료의 보호 구역의 지정기준단의 1.항중 “사찰건조물인 경우에는 1천미터”를 “사찰건조물의 경우에는 2천미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찰주변에 상가·숙박시설 등 시설물이 난립됨으로 인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주위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찰건조물인 국보·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보호 구역의 지정 기준을 1천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2천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함.
(문화공보부 제공)